

개인투자조합 및 크라우드펀딩 입법안에 대한 비교·검토

The Comparison and Review on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 and Crowdfunding Acts

강대웅*
Kang, Dae-Woong

목 차

- I. 머리말
- 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 III. 크라우드펀딩 입법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 IV. 맺음말

국문초록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1%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였고, 저출산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문제도 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 국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창조경제'란 타이틀 하에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15. 03. 25.

심사완료일 : 2015. 04. 29.

게재확정일 : 2015. 04. 30.

*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내변호사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신생·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2015. 4. 현재 국회에 세 가지의 입법안이 각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에 관한 기존의 제도로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인투자조합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벤처금융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크라우드펀딩과 개인투자조합은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더 많은 자금이 신생·벤처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도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그 입법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크라우드펀딩에 관하여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세 가지 입법안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근거법률, 자기자본 요건, 모집금액한도, 투자한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주제어 :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특별법, 자본시장법, 벤처특별법, 개인투자자, 벤처기업

1. 머리말

이번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

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또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 되고 있는바,¹⁾ 이러한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요구는 절실한 반면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직접금융보다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²⁾

따라서 기존의 금융권이나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신생·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제도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는 기업운영 자금의 새로운 조달 수단의 역할을 할 것이며, 기존의 벤처캐피탈이 주로 정책기관이나 일반법인, 연금, 공제회 등의 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에서 벗어나,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³⁾

이와 같은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제도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도 총 결성·투자금액은 291억 원에 그쳐⁴⁾ 2013년 벤처캐피탈의 총투자재원인 11조 5,052억 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⁵⁾

1)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인용

2) 이동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통상자원위원회, 2013, 1-2면.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KISTEP통계브리프, 2014, 5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말 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캐피탈조합의 출자비중에 있어 개인은 2.4%를 차지함에 그치고 있다.

4)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4.9.24.참조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KISTEP통계브리프, 2014, 3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서 이를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신생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2015. 4. 현재 세 가지의 입법안이⁶⁾ 소관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 개인 및 기타 법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영위함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며, 고액 자산가 및 대규모 기관투자자를 통하여 주로 자금을 확충하는 전통적인 자본조달과는 달리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 이러한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실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제도의 도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의 내용을 살펴 본 후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세 가지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 해보고,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어떠한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1. 벤처특별법의 제정

1997년 이전 우리나라 벤처기업정책은 주로 창업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벤처기업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벤처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벤처기업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벤처

6) 2013. 5. 24. 전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12.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 3. 30.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원동욱,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1권, 2014, 171면

특별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포함해서 금융, 세제, 인력, 입지 등의 종합적인 벤처기업지원 틀이 마련되었다.⁸⁾

벤처특별법은 제2장 제2절에서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의 원활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⁹⁾ 2001. 2. 3.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개인투자조합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이 필요한 고급인력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제13조 내지 14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 및 조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의 의의 및 결성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벤처특별법 제13조 제1항).

나. 등록요건

개인투자조합은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출자 1좌의 금액이

8) 송치승, “창조경제 하에서의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방안”, 한국증권학회지, 제43권, 제1호, 107면

9) 벤처특별법 제2장 제2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이 있다.

100만원 이상일 것 ③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일 것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⑤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 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등록 신청이 위 등록요건은 갖추지 못한 경우나 벤처특별 법 및 타 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5항).

다. 업무집행조합원

등록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 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 제13조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위 법 제13조의2 제4항).

라.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출자금 총액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위 법 제13조의2 제1항).

또한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의 업무를 담당한다(위 법 제13조의2 제2항).

마.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은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원 전원의 탈퇴,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등의 경우 해산하며,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위 법 제13조 제5항 및 제6항,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

바. 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위 법 제14조, 위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검토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49인 이하의 엔젤투자자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은 도입 첫 해인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2개, 이듬해부터 2011년까지 71개로 정체 상태를 보이다 2012년 78개, 2013년 85개로 점차 늘어난 후 2014년 말 108개로 전년 85개에 비해 23개(27%) 증가했으며, 2013년도 결성·투자금액은 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8%나 증가했다.¹⁰⁾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의 결성·투자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총 투자금액인 291억원은 2013년도 말을 벤처캐피탈의 총투자재원인 11조 5,052억원¹¹⁾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¹²⁾

개인투자조합이 조세에 대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원인은 벤처특별법 제13조에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합원의 총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공모와 사모의 구분을 벤처특별법의 개인투자조합 제도에도 따르도록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49인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조성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수를 반드시 49인 이하로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최근 논의 중인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크라우드펀딩

10)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4.9.24. 다만, 2013년 실적 중 개인투자조합 평균규모(2억) 보다 이례적으로 큰 몇 개의 조합이 결성되어 크게 증가한 것이며, 이런 이례적인 조합결성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 대비 247.2%가 증가했다.

11) 창업투자회사(101개) 10조5,988억원, 유한책임 회사형 벤처캐피탈(7개) 7,174억원, 신기술금융사(4개) 1,890억원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KISTEP통계브리프, 2014. 3면.

의 경우 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인투자조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나, 현 제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49인의 조합원 제한을 두는 것 보다는 투자하는 기업의 업종이나 피투자기업의 자금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내부에 개인투자조합 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문인력을 확충 통하여 개인투자조합 등록 심사 업무에도 전문성을 높이고, 현재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I. 크라우드펀딩 입법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2015. 4. 현재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세 가지의 입법안이 소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의안의 발의 순으로 보면, 2013. 5. 24. 전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라 함)과 2013. 6. 12.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동우 의원 개정안'이라 함) 그리고 2015. 3. 30.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상민 의원 개정안'이라 함)이 있고, 각 각 산업통산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다. 위 개정안들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창업지원법 개정안

가. 제안이유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직접금융보다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자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은 일반 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직접자금 형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조달 통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창업자 등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일정 한도의 금액을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소액투자금모집 및 그 소액투자금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1) '소액투자금모집'과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정의

“소액투자금모집”이란 창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른 소액의 한도에서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란 소액투자금모집의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써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안 제2조 8호 및 10호).

(2)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등록 및 요건

소액투자금모집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기자본과 투자중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안 제30조의2).

중소기업청장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안 제30조의3).

(3) 소액투자금의 별도 예치와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을 통하여 모집기간 중에 있거나 모집이 완료된 소액투자금(이하 “소액투자금”이라 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소액투자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소액투자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안 제30조의4 제1항 및 제2항).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소액투자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소액투자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소액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0조의4 제3항).

소액투자금의 투자자에 대한 우선 지급 등 별도 예치된 소액투자금의 인출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안 제30조의4 제4항).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안 제30조의5).

(4) 소액투자금모집업자의 공시의무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소액투자금모집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안 제30조의6).

(5)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범위 및 소액투자금모집 제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액투자금수요자에

대하여 소액투자금모집중개의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 요건으로는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매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지 않을 것 ② 소액투자금수요자에게 투자되는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소액투자금수요자의 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해당할 것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투자금수요자가 제30조의8에 따른 소액투자금모집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안 제30조의7 제1항).

투자금수요자에게 투자되는 자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안 제30조의7 제2항).

소액투자금수요자는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안 제30조의8).

(6) 투자정보 및 정보제공 의무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를 하는 경우 소액투자금수요자의 기본정보 및 사업정보,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를 통한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안 제30조의9 제1항 및 제2항).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하여 소액투자금모집중개 이후 해당 소액투자금수요자의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액투자금수요자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업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안 제

30조의9 제3항 및 제4항).

(7) 소액투자금모집계획 등 보고와 소액투자금모집결과의 통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소액투자금모집중개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액투자금모집계획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안 제30조의10).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라 증권의 청약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소액투자금모집결과 「상법」 제3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소액투자금수요자로부터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안 제30조의11).

(8) 중개수수료 및 청약철회 등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수요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안 제30조의12).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와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한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승낙을 한 투자자는 모집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을 취소(이하 “청약철회”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0조의13).

(9) 소액투자금모집광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투자금모집수요자는 그 증권에 대하여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할 수 있다.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그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명칭,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소액투자금모집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투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0조의14 제1항 내지 제3항).

소액투자금모집광고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소액투자금모집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0조의14 제4항 및 제5항).

(10) 결산 보고 및 실태조사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30조의15).

중소기업청장은 소액투자금모집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영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업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안 제30조의16 제1항 및 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안 제30조의16 제2항).

(11) 무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46조의 2).

소액투자금중개업자는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증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증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위 손해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안 제 46조의 3).

2. 신동우 의원 개정안

가. 제안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이 JOBS법을 통해 경제부흥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이후,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기업들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조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다.

나. 주요내용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와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안 제9조 제27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안 제117조의3).

(2) 등록 및 그 요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안 제117조의4 제1항).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가 ①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②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④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⑤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4 제2항 및 제3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및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4 제4항 및 제6항)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4 제7항 및 제8항).

(3) 명칭 및 지배구조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 6).

(4) 영업행위의 규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7 제2항 및 제3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안 제117조의7 제4항 및 제5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7 제6항 및 제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안 제117조의10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7 제8항 및 제9항).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 권유 행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①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②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인이 공시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③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인이 공시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7 제10항).

(6) 청약증거금의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

117조의8 제1항 및 제2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 누구든지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8 제3항 및 제4항).

(7) 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안 제117조의9 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9 제2항).

(8) 증권의 모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안 제117조의10 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안 제117조의10 제2항), 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10 제3항).

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10 제4항).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쳐 자본시장법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양도 할 수 있다(안 제117조의10 제6항).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안 제117조의10 제7항).

(9) 투자 한도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에는 ①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②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은 2,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투자 한도로 하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①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②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투자 한도로 한다(안 제117조의10 제5항).

(10) 공시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발행인의 ① 재무 상황 ② 발행인의 사업계획 ③ 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④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 ④ 그 밖에 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11).

(11) 손해배상책임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된 공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인 및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안 제117조의12).

(12)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투자자명부의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증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13).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 14).

3. 김상민 의원 개정안

가. 제안이유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 질서가 아닌 새로운 금융 거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신생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어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를 가능하게 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개인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다.

나. 주요내용¹³⁾

(1) 등록 및 그 요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안 제117조의4 제1항).

13) 개정안의 내용 대부분이 신동우 의원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양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 부분만을 살펴본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가 ① 1천만원¹⁴⁾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②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임원이 자본시장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4 제2항 및 제3항).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¹⁵⁾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및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4 제4항 및 제6항)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위 등록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4 제7항 및 제8항).

(2) 명칭 및 지배구조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

14) 신동우 의원 개정안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규정되어 있음.

15) 신동우 의원 개정안의 경우 ‘2개월’로 규정되어 있음.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자본시장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 6).

(3) 투자광고의 특례¹⁶⁾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는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스앤에스 등 소셜사이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②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 ③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의 제공 등의 방법 외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안 제117조의9 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9 제2항).

(4) 증권의 모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10억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안 제117조의10 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안 제117조의10 제2항),

16) 신동우 의원 개정안의 경우 투자광고의 수단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의 제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김상민 의원 개정안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를 통한 광고도 허용하고 있음.

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10 제3항).

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안 제117조의10 제4항).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쳐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안 제117조의10 제6항).¹⁷⁾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안 제117조의10 제7항).

(5) 투자 한도¹⁸⁾¹⁹⁾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해 누적한

17) 김상민 의원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 의무화와 1년간 매도나 인출을 금지하였다. 반면 신동우 의원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증권의 매도나 인출을 1년간 금지하고 있음.

18) 신동우 의원 개정안의 경우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의 상한을 소득 등 대통령령의 요건의 구비여부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김상민 의원 개정안은 이런 구별을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19) 또한 신동우 의원 개정안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김상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117조의10 제5항).

4. 각 개정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1) 근거 법률

지금 까지 살펴본 세 가지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신동우 의원 개정안과 김상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서, 창업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어떠한 법체계에 포섭시켜야 하는지의 문제는 제도의 핵심 가치 내지 무게 중심을 투자자 보호에 두느냐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두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발전, 투자자의 보호, 금융투자업의 육성 등 세 가지를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자 보호”이다.²⁰⁾ 반면, 중기창업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과 창업지원법 중 어떠한 법을 근거 법률로 삼는가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등록 업무와 관리 감독 사무를 어떠한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된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등록 심사 권한을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맡게 되는 반면, 창업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 심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같이 중소기업청장이 맡게 된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업체의 중개를 통한 신생·벤처기업 등의 증권 공모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규제완화의 핵심은 기존의

20)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공모규제 및 업규제의 완화와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 장치의 마련이며,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규제 차이와 규제공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²¹⁾

반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²²⁾

첫째, 크라우드펀딩을 도모하는 기업은 1인 창조기업, 소규모 기업, 신생기업 및 창업후 수년 이내의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이나 이익이 미미하여 자본시장시장법상의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에는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의 본질이 다르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의 한정된 인적·물적 기반과 미미한 지명도 및 공신력을 갖춘 영세업체로서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업자 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투자자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투자목적만 보유할 뿐 그 기업에 대한 후원자적 관점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후원과 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소비 등 복합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성격이 다르다.

넷째,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중·대형 법인의 대규모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인데, 1인 창업기업 등 극히 소규모인 기업까지 자본시장 체계로 가져올 경우 규제체계의 복잡, 다기화를 초래하여 법적 규제의 단순 명료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및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이 어렵다는 점에 기초한다.²³⁾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이러하다면 크라우드펀딩 법안들은 중소기업창업 지

21)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3, 51-52면.

22)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400-401면.

23) 이동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통상자원위원회, 2013, 1-2면.

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가치에 그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고, 자본시장법의 통제 아래 이루어 졌던 금융투자업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투자자가 기존의 증권시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투자는 주식의 양도 차익을 통한 자산 증식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대상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 반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모인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직접 투입되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기존의 투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소액 투자확대를 통해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의 입법 목적임을 생각할 때, 창업지원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여 그 관리·감독 사무를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자기자본 요건

신동우 의원 개정안과 김상민 의원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의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동의 의원 개정안은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출 것을, 김상민 의원 개정안은 1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출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데, 수익성의 측면에서 투자자문업자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자문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투자자문업자는 고액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자기자본 5억 원은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는 반면, 크라우드펀딩업체의 주된 수입원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과정에서의 수수료인데, 과연 수수료의 규모가 5억 원의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보전하기에 충분할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예측하

기 힘들 것이라고 하며, 신동우 의원 개정안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은 과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²⁴⁾

이와 같은 자기자본의 금액 차이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장벽에 관한 것으로서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의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진입할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정안이 위와 같은 자본금 요건을 두어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자기자본 요건 이외에도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물적 설비, 임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24조의 요건, 대주주의 출자 능력과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와 같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은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요건이라 생각된다.

(3) 모집 금액 한도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개정안 모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투자자가 5% 이상의 공모 지분을 매입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공모금액 한도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연가 1백만 달러의 한도를 정하고 있고, 영국은 500만 유로, 프랑스는 100만 유로를 증권법상 공모규제를 받지 않는 크라우드펀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²⁵⁾

이러한 모집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공모에 비해 1인당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소액공모를 이용하는 기업에 비해 크라우드펀딩 이용 기업의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성정하고 있기

24) 원동욱,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1권, 2014, 200면.

25)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일감법학, 제29호, 2014, 179면.

때문에 위험성이 훨씬 높을 수도 있으므로 소액공모보다 조달금액을 하향하여 연간 5억원 내지 7억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²⁶⁾

클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성장기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 모집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의견과 같이 업종의 구별 없이 모집금액의 한도를 5억원 내지 7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클라우드펀딩 제도는 소규모 창업을 위한 제도로 그 역할이 제한되게 될 것이므로, 모집 금액의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한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 기업의 업종을 전기, 기계, 장비, 영상, 공연, 음반, 화학, 바이오, 의료, 게임, 유통,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에 따른 창업초기 비용을 고려하여 그 한도를 책정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투자 한도

세 가지의 개정안은 개인별 투자 한도에 대해서 각 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소액투자금수요자의 투자금모집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투자자 개인별 투자 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동우 의원 개정안은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에는 ①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②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은 2,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투자 한도로 하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①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②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투자 한도로 정하고 있다(안 제117조의10 제5항).

또한 가장 최근 발의 된 김상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증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

26) 성희환, “지분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406면.

액은 최근 1년간 동일 발행인에 대해 누적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안 제117조의10 제5항) 규정하여 동일인에 대한 1년간 누적 투자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 1년간 총 누적투자금액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크라우드펀딩은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특정 일반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모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기업별 투자한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투자위험의 분산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기업별 투자한도 문제와는 달리,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1인당 연간 총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위험감수 결정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후견적 개입이 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총투자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거증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²⁷⁾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1%대의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어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의미 있는 투자 수단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식투자나 펀드가입 등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한 제한에 비례하여 1인당 연간 총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투자 한도에 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투자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법 제도인 벤처특별법상의 개인투자조합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세 가

27) 성희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415면.

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우선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의 결성과 총 투자금액 등이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전제 벤처캐피탈에서의 기여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서 자본시장법상의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원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현 법 규정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업종 및 자금 수요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49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조합원 수에 대한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하여 보았고,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인력의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개정안 들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근거법률, 자기자본 요건, 모집 금액 한도, 투자한도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 보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1%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였고, 저출산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문제도 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는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더 많은 자금이 신생·벤처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좀 더 다듬어 지고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 침체국면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를 깨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이동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통상자원위원회, 20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KISTEP통계브리프, 2014.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2014.9.24.

원동욱,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11권, 2014.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3.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3.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일감법학, 제 29호, 2014.

[Abstract]

Comparison and Review on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 and Crowdfunding Acts

Kang, Dae-Woong

In-house Lawyer, Value Invest Korea Inc.

Current Korean economy entering into low growth and 1% low interest era, which is engaged in the problem such as low birth rate and high youth unemployment, the stagnancy of economy is generally showing. As breakthrough for the slowdown of economy conjuncture,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shing ahead with various policies, one of which, under the title of 'Creative Economy', tries to support new ventures and start-ups, which thereby become the new pow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addition,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national operating keynote, the

National Assembly has made an active discussion on the ‘Crowdfunding’ introduction.

As ‘Crowdfunding’ is that new ventures or start-ups with creative ideas or operation plan adduce their business plan through online to raise funds from sympathetic small investors, being discussed as a key measure for the re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in April, 2015, at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three proposals are submitted to each jurisdiction committee.

As existing system of private investors in venture investment, subject to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Private investment fund is operat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 impact of the entire venture capital fund is very meager.

In this manuscript, preemptively,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issues on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 with the provision of the law as the center, comparing the contents on crowdfunding, we will try to point out issues on differences among three proposals such as legal basis, capital requirements, the limit of total funding amount, investment limits.

Key words : crowdfunding,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 Act o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Special Act on Venture Corporation Development, Act on Capital Market, Special Act on Ventures, Private Investor, Venture Corporation